



[등록번호 : 20140964]

[최초등록 : 2014. 10. 08.]

[최종등록 : 2025. 05. 22.]

www.jambajuice.co.kr

[잠바주스]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주식회사 빅바이트컴퍼니]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31번길 18 (상대원동)

서울사무소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01, 5층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070-5004-4539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6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1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2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28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50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52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54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56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식회사 빅바이트 컴퍼니	잠바주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31번길 18(상대원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3.12.01.	2023.12.01.	이광	-	-
	법인등록번호	131111-0721934	사업자등록번호	393-86-02980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사업(경영)기간	주소
대표이사	이광	잠바주스	2024.09.~현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31번길 18 (상대원동)
사내이사	유승환			
사내이사	정석우			
감사	장세인			
계열회사 (대표자)	(주)파리크라상 (황재복,김성한)	파리바게뜨	1988.9.~현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31번길 18 (상대원동)
		파스쿠찌	2003.11.~현재	
		잠바주스	2014.10.~2024.08.	
계열회사 (대표자)	(주)에스피씨 삼립식품 (황종현)	빛은	2006.2.~현재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101 (정왕동) (대표전화번호: 080-739-8572)
		따빠오베이커리	1996.4.~현재	
		르뽀미에	2007.4~현재	
		잇투고	2014.2.~현재	
계열회사 (대표자)	비알코리아(주) (도세호)	배스킨라빈스	1987.3.15.~현재	충북 음성군 삼성면 금일로 955-25 (대표전화번호: 080-555-3131)
		던킨도너츠	1995.1.15.~현재	

*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영업표지(잠바주스)를 말함 (파리크라상, 리나스, 타마티, 아멜리, PASSION5, 쿤스파크, 라그릴리아 등 비가맹사업 제외)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주식회사 파리크라상	잠바주스	2024.09.01.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31번길 18	황재복 김성한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잠바주스]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잠바주스	-
상 호	잠바주스 OO점	-
상표 (서비스표)	JAMBA JUICE	미국 잠바주스 컴퍼니의 서비스표 제0447780호 등에 대하여 라이선싱 계약에 따라 사용중
광 고	대중매체(신문, 잡지 등)를 통한 다양한 광고 홍보 활동 및 PROMOTION 실행	-
그 밖의 영업표지	 등	-

※ 그 외의 사항은 홈페이지 및 홍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구분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주)파리크라상	2021년	1,704,163,333	979,247,542	724,915,791	1,851,198,919	33,443,677	24,760,877
	2022년	1,701,368,163	980,241,188	721,126,975	1,984,740,447	18,799,944	3,179,667
	2023년	1,774,635,621	1,045,084,613	729,551,008	2,008,359,930	19,881,706	7,849,062

(주) 빅바이트 컴퍼니	2021년	-	-	-	-	-	-
	2022년	-	-	-	-	-	-
	2023년	54,402,947	13,228,371	41,174,576	8,950,547	31,899	43,153

상기 재무상황은 가맹사업 양수양도로 인하여 (주)파리크라상과 (주)빅바이트컴퍼니의 재무상황을 같이 표기합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이광	대표이사	2023. 12. ~ 현재	대표이사	총괄
	유승환	사내이사	2023. 12. ~ 현재	사내이사	경영기획
	정석우	사내이사	2023. 12. ~ 현재	사내이사	영업
	장세인	감사	2023. 12. ~ 현재	감사	재경

※기재 기간: 최근 3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등기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	771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잠바주스 외에도 다음과 같이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계열회사	(주)파리크라상	제과제빵	1988.6.23.~현재	파리바게뜨(제과제빵)	20080200064
		커피	2003.11.5.~현재	파스쿠찌(커피전문점)	20090100251
계열회사	비알코리아(주)	아이스크림 도너츠	1987.3.15.~현재	배스킨라빈스(아이스크림/빙수)	20080500015
				던킨도너츠(제과제빵)	20080500016
				따뽀오베이커리(제과제빵)	20080200109
계열회사	(주)에스피씨 삼립	유사업종 등	2003.11.15.~현재	르뽀미에(제과제빵)	20080200110
				빛은(기타외식-떡류, 한과류)	20080200076
				잇투고(패스트푸드)	20140503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경영하는 가맹사업 외의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SHAKE  SHACK® 쉐이크쉍 (햄버거 전문점)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잠바주스 (상표권/ 서비스표권)	전용 사용권	출원 2002. 05. 09.	출원4120020009617	잠바주스 컴퍼니	2034. 08. 27. (2034. 08. 27)
		등록 2004. 08. 27.			
		갱신 2024. 07. 30.	등록4101049870000		

상기 지식재산권 당사가 전용사용권을 획득하고 있는 서비스표이며, 귀하가 가맹점 사업자로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업표지입니다. 그 외에 귀하는 “”, “JAMBA JUICE”, “JAMBA” 등이 포함된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개설하는 경우 가맹계약 목적범위 내에서 위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위 지식 재산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잠바주스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4년 11월 27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11년 01월 28일)

2. 잠바주스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파리크라상	잠바주스	조상호	2014. 6. 9. ~ 2014. 9. 25.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31번길 18
(주)파리크라상	잠바주스	조상호, 권인태	2014. 9. 26. ~ 2016. 11. 1.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31번길 18
(주)파리크라상	잠바주스	최석원	2016. 11. 1. ~ 2017. 9. 14.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31번길 18
(주)파리크라상	잠바주스	최석원, 권인태	2017. 9. 15. ~ 2018. 3. 30.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31번길 18
(주)파리크라상	잠바주스	권인태	2018. 3. 31. ~ 2019. 3. 25.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31번길 18
(주)파리크라상	잠바주스	권인태, 황재복	2019. 3. 26. ~ 2019. 10. 31.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31번길 18
(주)파리크라상	잠바주스	황재복	2019. 11. 1. ~ 2021. 3. 7.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31번길 18
(주)파리크라상	잠바주스	황재복, 이명옥	2021. 3. 8. ~ 2023. 2. 22.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31번길 18
(주)파리크라상	잠바주스	황재복	2023. 2. 23. ~ 2024. 4. 4.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31번길 18
(주)파리크라상	잠바주스	황재복, 김성한	2024. 4. 5. ~ 2024. 08. 31.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31번길 18
(주)빅바이트컴퍼니	잠바주스	이광	2024. 9. 1. ~ 현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31번길 18

3. 잠바주스 업종

영업표지	업종	
잠바주스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음료 (커피외)	스무디, 생과일주스 등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잠바주스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31	8	23	30	8	22	29	8	21
서울	10	1	9	10	1	9	10	1	9
부산	2	0	2	2	0	2	2	0	2
대구	0	0	0	1	1	0	1	1	0
인천	10	0	10	9	0	9	8	0	8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0	0	0
경기	9	7	2	8	6	2	8	6	2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0	0	0
전북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0	0	0
경남	0	0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5. 최근 3년간 잠바주스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4	5	1	0	0	8
2022	8	1	1	0	1	8
2023	8	0	0	0	0	8

※ 신규개점은 가맹점 오픈일 기준

잠바주스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홈페이지(www.jambajuice.c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잠바주스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잠바주스 외에도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최근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2008 0200064	제과제빵	3,402/27	3,419/27	3,389/26
		파스쿠찌	2009 0100251	커피	498/25	494/27	477/32
	비알코리아(주)	배스킨라빈스	2008 0500015	아이스크림 /빙수	1,511/75	1,653/67	1,687/65
		던킨도너츠	2008 0500016	제과제빵	613/105	633/74	631/59
	(주)에스피씨삼립	빛은	2008 0200076	기타외식	48/9	44/6	35/5
		따빼오베이커리	2008 0200109	제과제빵	55/0	47/0	42/0
		르뽀미에	2008 0200110	제과제빵	2/2	2/2	2/2
		잇투고	2014 0503	패스트푸드	0/0	0/0	0/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잠바주스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운영일 180일 미만 점포는 산정 제외함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단위: 천원)						산정제외 점포수
		연간 평균매출액		연간 평균매출액 상한		연간 평균매출액 하한		
		평균매출액	면적 3.3㎡당	평균매출액	면적 3.3㎡당	평균매출액	면적 3.3㎡당	
전체	8	449,625	30,735	1,105,399	26,039	221,450	3,499	
서울	1	1,105,399	29,876					5개 미만
부산	0							
대구	1	231,337	11,548					5개 미만
광주	0							
대전	0							
인천	0							
울산	0							
경기	6	376,711	37,671	472,611	26,039	221,450	16,776	
강원	0							
충북	0							
충남	0							
전북	0							
전남	0							
경북	0							
경남	0							
제주	0							
세종	0							

* 운영일 180일 미만 점포는 산정제외함.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2023년 오픈매장 중 운영일 180일 이상의 매장은 오픈월을 제외한 달의 **월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연간 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 근거로 하였습니다.** 추정에 따른 오차 발생 가능성이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해 주십시오.

2023년 오픈 매장중 운영일이 180일 미만인 점포의 매출자료는 연간 평균매출액을 구하는데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의 유형별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가맹점사업자의 노력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로 예상매출액 산정표를 제공받을 경우, 그 예상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 가능합니다.

8. 잠바주스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잠바주스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

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①	평균 영업기간 ^②
2023	8	1,537

①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수를 기준

②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의 최초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영업한 일수를 모두 더하여 직전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수로 나눈 기간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직접 잠바주스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가맹지역본부, 지역총판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무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전국지역	J&J사업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31번길 18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이광	-	8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	○	○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는 2023년에 잠바주스(직영점 포함)와 관련하여 광고선전비로 195,682,157원 및 판매촉진비로 450,696,728원을 사용하였습니다(부가세 미포함).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45]쪽을 참고하십시오.

※ 당사가 부담한 위 광고비 및 판촉비에는 다른 브랜드/사업 등에 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주)하나은행	플랫폼제휴마케팅부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1599-1114 (에스크로 대표번호)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후 당사가 하나은행 에스크로 홈페이지(www.hanaescrow.com)에 가맹점사업자를 사전등록하면, 가맹점사업자는 위 홈페이지의 "조회센터" → B2B → 프랜차이즈B2B에서 에스크로에 가입하고, 가맹금을 입금합니다.

귀하는 또한 [하나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잠바주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과 일부장비 (에어컨, 전 기증설, CCTV 등)의 비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실제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개 점 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이하설명
디자인 설계 매뉴얼 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이하설명
교 육 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이하설명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이하설명
설비,오픈비용 등 기타 비용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이하설명

1)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천원/부가세 포함)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개점비	11,000	체결 즉시	이하설명	이하설명	이하 설명
디자인 설계 매뉴얼 비	3,300	체결 즉시			
교육비	1,650	체결 즉시			
계약이행보증금	10,000 (VAT 대상아님)	체결 즉시			

※ 가맹점 개설 시 계약이행보증금은 해당 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0,000천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책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① 개점비

귀하는 당사로부터 가맹점 개설 전 및 초기에 시장조사, 물품, 인력, 판촉, 홍보, 초기 운영 매뉴얼 등을 지원 및 제공받는 대가로 가맹계약 체결 시 개점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개점비는 가맹점 개설 전 및 초기에 위의 지원 및 제공의 대가로 모두 소모됩니다.

② 디자인 설계 매뉴얼 비

당사는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 있는 도면설계 등 컨설팅 업무를 지원하고 상표권(CI)과 고유브랜드 디자인 매뉴얼 사용을 허용하며, 귀하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적용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계약 체결 시 디자인 설계 매뉴얼 비를 지급하여 하며, 가맹점 운영 중 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합니다.

디자인 설계 매뉴얼 비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③ 교육비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귀하를 포함한 과정별 기준인원 준수)은 가맹사업의 통일성 등의 유지를 위하여 가맹점 개점일 전까지 가맹본부의 교육계획에 따라 가맹점입문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귀하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계약 체결 시 교육비(강사료 및 시설사용료 등)를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귀하의 요청에 따른 수강신청 인원이 과정별 기준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귀하는 추가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받는 도중에 중단하게 될 경우,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잔여 교육비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관한 부분 참조)

④ 계약이행보증금

귀하는 제품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계약 체결 시 당사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예탁(무이자)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가맹계약 갱신 시 가맹계약 만료 전의 매입대금 또는 점포환경개선(리뉴얼, 점포 이전 또는 확장) 후 매입대금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증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기간 중 매출 활성화로 인하여 1개월 기준 일평균 매입대금의 5일간 합산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의 80%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와 귀하의 협의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가맹계약 종료 시 전액(이자제외)이 귀하에게 반환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품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 등 당사에 대한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이 반환되게 됩니다.

2)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25,950
개점비	11,000
디자인 설계 매뉴얼 비	3,300
교육비	1,650
계약이행 보증금	10,000 (VAT 대상아님)

※ 일반적인 가맹금(예치가맹금) 반환사유 및 그 범위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가맹금을 수령(예치기관에 예치한 경우 및 예치하기로 합의한 경우 포함)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한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 중단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비용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3.3㎡당 비용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비고
인테리어	개별 계약대상	약 52,300	약 2,905	개별계약 조건에 따름	반환되지 않음 (영업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60㎡기준(18평) <외부공사 미포함>
간판 (SIGN류 포함)	가맹본부	약 8,300		오픈5일전		전면 6m기준 (어닝공사 별도)
장비/가구류	가맹본부	약 59,500		오픈5일전		28p. 참고
최초공급 상품비용	가맹본부	약 5,000		오픈5일전		“제품 등”초도물량비용 (점포환경에따라유동적)
합계	가맹본부등	약 125,100	약 6,950			18평 기준

① 외부 및 기타공사 미포함 ② 구매형태에 따라 상이함 ③ 이벤트및집기류 ④ 에어컨 및 전기증설 외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평균 비용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4)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협의 선정)	담당자 배정 → 상담 및 가맹희망자 희망 개설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 입지 도출/협의 → 가맹희망자 최종결정 ※실면적 60㎡ 이상, 전면 6M이상 최적의 상권입지 여부

* 상권 및 점포특성 등에 따라 기준 면적 이하의 점포도 오픈이 가능할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당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주체]

당사는 자체조사 또는 귀하의 의뢰에 따라, 아래 선정기준에 의하여 가맹점 개설입지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영업지역의 범위, 개설위치는 귀하와 당사 사이의 협의에 따라 정합니다.

[선정기준]

당사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상권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일반적인 위치선정	지역상권	서울, 대전, 부산 등과 같은 대도시 범위
	지구상권	영등포구, 성북구, 강남구 등과 같이 중규모 범위
	지점상권	여의도동, 돈암동, 압구정동 등과 같이 소규모 범위
위치선정시 고려사항	1. 지점 및 지구내의 충분한 잠재고객이 있는가? (배후지 세력 참고) 2. 동업종의 분포 현황과 장단점은 무엇인가? 3. 해당 지점내의 고객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4. 거리, 교통, 주차장 등의 접근의 용이성은 어떠한가? 5. 상품 매입이나 기술의 구입은 용이한가? 6. 가맹점사업자의 생활환경(자녀의 학교 문제, 교통 등)에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	
위치선정시 확인사항	통행량	유동인구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
	주변상가분석	1차 상권 내의 주변상가가 발전이 계속 되는 곳인지 아니면 쇠퇴기에 접어든 곳인지 면밀히 분석
	접근성	고객의 흡인이 용이하도록 점포의 입구나 건물목 상태, 고객의 주요 유동 방향 등을 확인
	시계성	눈에 잘 띄는 장소인가여부 확인
	연출성	입주 예정 점포의 과거 영업을 판단, 응용하여 상권내의 특색 있는 점포 이미지를 연출
점포조사	점포를 계약하기 전,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 여부, 도시계획 여부, 점포 건물의 노후정도 등에 대한 확인을 하고, 위 확인사항에 대한 확인 결과를 담은 점포 조사표를 작성함	

5)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귀하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가맹점운영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되며, 제조·판매 등 점포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고용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① 점포에서 근무할 종업원에 대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실시하는 가맹점입문교육 및 신규점 보수교육, 서비스 보수교육 등을 수료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입문교육은 직무이론, 점포실습, 제조실습으로 구분되며, 개점일 전까지 귀하 또는 귀하의 종업원 전부 또는 일부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은 교육 수료 이후로 연기됩니다.

- ③ 귀하는 최저임금 준수, 고용계약서 작성 등 고용 및 근로관계와 관련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거나 당사의 시정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이는 가맹계약의 갱신, 해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사오니, 이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 ④ 귀하는 최초 재계약전 필수적으로 '보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할 수 있으며, 본 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계약연장이 가능합니다.

6)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잠바주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7)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의 부담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 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	-------	----	------	------	-------------	----

환경개선 비용 (인테리어 공사)	공급업체	2,100~2,700 /3.3㎡	개별계약에 의함	반환 되지 않음	영업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하단 설명
로열티	가맹본부	순매출액의 4%	익월 대금청구후 5일 이내			가맹계약 제14조
POS구매비용	가맹본부	별도설명	-			22P 참고
상표사용료	-	로열티에 포함	-			-
광고료	가맹본부	별도설명	-			47P 참고
리스료		해당없음	-			-
온라인음원사용료	공급업체	10,450원/월	매월대금청구시			하단 설명
제휴카드 등	카드업체	-	-			하단 설명
해피포인트 카드	가맹본부	-	-			하단 설명
상품권	가맹본부	-	-			하단 설명
모바일 교환권	가맹본부	수수료일부	매월대금청구시			하단 설명
오픈 파견지원비	가맹본부	1,155 ~ 1,815	오픈월 익월 대금청구시			하단 설명 별도 약정
재고 및 회계처리비용	-	해당없음	-			-
물품대금 등	가맹본부	-	-			하단 설명
해피오더, 픽업/딜리버리 등	제공업체	별도설명	별도설명			선택사항

① 로열티 비용

귀하는 상호, 상표, 서비표, 휘장 등의 사용 및 경영지원에 대한 대가로 당사에 정기지급금(로열티)를 매월마다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당해 월 동안의 **순매출액(VAT별도)의 4.0%**로 합니다.

순매출액의 산정기준은 가맹계약서 제14조 제2항에 의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서 제 14 조 (정기지급금 : 로열티)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월 말일까지의 POS 매출을 기준으로 정산한 순매출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 가맹본부는 통지한 순매출을 기준으로 로열티 금액을 확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대금 청구서를 발행하며, 가맹점사업자는 물품대금청구서 발행 후 5일 이내에 이를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음원사용료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당사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귀하에게 매장 내 사용하는 배경음악(BGM; Background Music)의 종류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불법음원 사용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브랜드이미지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귀하에

게 정당한 범위 내에서 BGM 제공 전문업체와의 거래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BGM 제공 전문업체와 거래를 하는 경우 귀하는 합법적인 음원사용료를 매월 BGM 제공 전문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음원사용료 수금업무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귀하와 업체와의 협의에 따라 해당 음원 사용료의 수금업무를 당사가 무상으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 음원사용료는 물가상승 등 업체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제휴카드 등

당사는 판매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통신사, 신용카드 등의 제휴 할인 및 적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 운영에 따른 발생 비용의 부담은 각 제휴업체에 따라 다르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절차	비고
신용카드 할인제휴	사전 공지에 따라 분담하고, 별도 분담비율이 공지되지 않을 경우 5:5로 분담		없음	할인방법은 카드사에서 대금청구서 할인 방식으로 시행됨. 신용카드수수료는 가맹점 부담임.
기타 제휴 프로모션		월 단위 (또는 행사 종료 후) -대금청구서 반영	제휴프로모션 시행시 프로모션 내용과 비용 부담률을 사전 공지함.	
분담절차				
제휴계획 공고 → 제휴 시행 → 분담금 정산				

* 당사는 추가적인 제휴를 하거나 제휴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분담은 당사 50%, 가맹점사업자 50% 비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환경개선 비용

점포의 노후화(약 5년), 주변 환경 및 시장여건의 변화, 브랜드 전체적인 이미지 혁신 기타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점포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며, 환경개선의 범위와 일정 및 그에 따른 비용 등은 해당 점포의 노후도 및 구조, 환경 등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별지Ⅵ. 점포환경개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⑤ 해피포인트 카드 제도

당사는 고객들의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하고, 고정고객을 확보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증진 등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피포인트 적립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해피포인트 적립은 직접 구매고객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제도이므로, 구매고객이 적립하지 않은 포인트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고용인 등에 의하여 적립될 수 없으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해피포인트카드제도 이용약관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해피포인트카드 제도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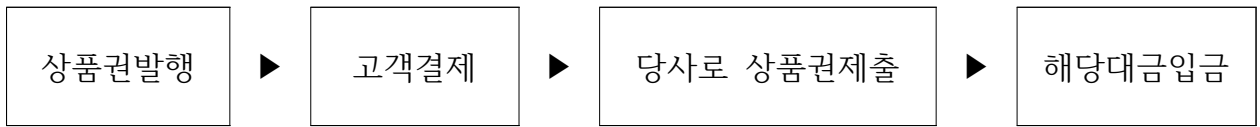
- 1.가맹점사업자는 해피포인트 카드회원이 점포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1,000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해 주어야 하고, 회원의 적립포인트가 1,000포인트 이상일 경우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시 현금 대신 사용 가능토록 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사용된 포인트 전부를 1포인트 당 1원으로 정산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입금 하여야 합니다. 회원의 적립포인트는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으며 구매에 사용된 포인트에 대하여도 추가로 적립하지 않습니다.
- 2.해피포인트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가맹점사업자는 적립금의 50%, 카드비용의 50%, 통신비용을 부담하며, 가맹본부는 적립금의 50%, 카드비용의 50%, 해피포인트카드의 시스템 운영비용(신청서 제작 및 입력비용, 080서비스 운영비용, VAN 사용료 등)을 부담합니다.
3. 적립 부담금 및 포인트 사용금의 정산은 5일 단위로 합니다.
- 4.가맹본부는 해피포인트카드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 및 회원약관에 따라 실효된 적립금을 해피포인트카드 광고선전비 또는 시스템 운영 제반 비용 등 해피포인트카드에 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5. 가맹본부는 회원 중 기부 희망자의 적립금 중 10%를 활용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그 활용내역을 가맹본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 등 공개된 채널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회원에게 공지 후 사회공익활동을 위하여 해피포인트카드 적립금을 현금화 하거나 이를 관련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는 회원에게 해피포인트제도와 기타 할인제도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7. 가맹계약 종료 시 가맹점사업자의 해피포인트카드 적립금은 가맹본부에게 예치됩니다. 단, 가맹본부는 폐점일전 고객이 사용한 포인트 사용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정산하여야합니다.
8.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고객의 거래내역 변경에 따라 포인트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확인작업을 거쳐 처리절차 합의내용에 따라 당월 정산 시 반영하도록 합니다.
9.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는 해피포인트 카드와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관련법령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10. 가맹점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접수 받은 해피포인트카드 신청서의 보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11. 가맹본부는 해피포인트카드의 운영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을 변경 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점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12. 가맹본부는 해피포인트카드 서비스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중단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서비스 중단 기준일은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된 게시물 또는 POS 등에 명시된 일자로 합니다.
13. 가맹본부는 상기 정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해피포인트 가맹점은 잠바주스, 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파스쿠찌,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빗은, 타마티, 리나스 등 계열회사 브랜드 외 기타 제휴 업체를 포함합니다.

⑥ 상품권제도, 모바일 실물교환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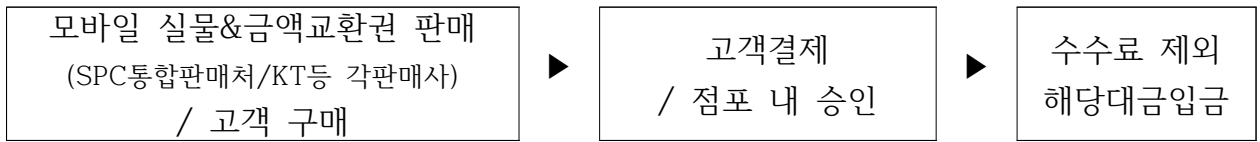
당사는 고객들의 결제수단을 다각화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증진을 도모하는 등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모바일 실물교환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권, 기프트카드>



- * 상품권사용처 (변동될 수 있음)
- (ㄱ) 통합상품권 :잠바주스, 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파스쿠찌,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등
- (ㄴ) 파리크라상 상품권, 기프트카드 : 잠바주스, 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파스쿠찌, 리나스 등

<모바일 실물& 금액교환권 : 해피콘, KT기프트쇼 등>



당사가 귀하에게 입금하는 대금은 액면금액 중 귀하의 부담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고, 지류 상품권의 귀하 부담부분은 없으며, 각 모바일 실물교환권은 귀하가 수수료 중 POS 공지에 따른 비율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부담비율 및 수수료율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변동 시 POS 등으로 고지합니다.

⑦ POS 장비

귀하는 제품, 상품 등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POS 장비를 설치.운용하여야 합니다.

POS 장비와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유지보수는 무상AS기간 이후 종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항목	비용	비고
POS 장비	3,080천	구매시로부터 1년간 무상AS(사용자 과실 제외)
유지보수	22천/월	부품교체비용 별도

- (a) POS 장비 기본 구성품목 : POS+영수증프린터+현금보관통
- (b) 주변기기 무상대여 : 전자서명패드, 바코드스캐너, 체크단말기
cf. 주변기기는 가맹계약기간 내 무상AS적용됨.(단, 사용자 과실 제외)
- (c) AS 및 비용은 별도 선정된 전문업체와 진행/지급됨.
- (d) 상기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오픈시 점포개설 담당자 등으로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음.

⑧ 오픈파견지원비

당사는 점포 오픈 시에 점포지원 및 제조, 위생, 품질, 시스템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정착을 목적으로 점포에 일정 기간 직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제도운영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부가세 포함)

파견기간	파견인원	비용발생여부	금액	비고
15일간	1명	유상(가맹점사업자 부담)	1,155~1,815	

※ 유상파견 기간은 최장 15일이나, 파견기간은 서면에 의한 상호 협의하에 조정할수 있습니다

⑨ 물품대금 등

귀하는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대금, 로열티 등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일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계약이행보증금의 80% 이상을 미수로 하거나 5일 단위 결산청구 대금을 2회 이상 지연한 경우 당사는 POS 등을 통하여 그 시정을 최고하고 최고 후 5일 이내에 미수금이 계약이행보증금의 80% 미만으로 되지 않거나 지연미수금이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 사전고지 없이 시정요구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귀하에 대한 제품 등 물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고, 이러한 물품공급 중단이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가맹계약 갱신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등의 미수금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여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제품주문/점간이동 등이 함께 중단됩니다.

당사는 상기 물품공급 중단사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일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귀하의 물품공급 범위를 보증금 범위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⑩ 해피오더, 픽업/딜리버리 등

당사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한 잠바주스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픽업/딜리버리 제도(앞으로 [해피오더]라고 합니다.)를 직접 또는 제3자(앞으로 [서비스제공자]라고 합니다.)를 통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해피오더 제도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해피오더 제도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 외에

는 당사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귀하가 해피오더 제도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피오더 서비스제공자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위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와 체결한 약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피오더 제도에 대한 주요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해피오더 제도의 주요내용**

1. 해피오더 제도는 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모바일 주문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이 제품 또는 상품을 주문하면, 고객이 지정한 점포에서 이를 준비하여 픽업 또는 배달 방식으로 고객이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해피오더 제도는 고객이 직접 가맹점사업자의 재고를 조회한 후 제품 또는 상품을 구매할 점포를 선택하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로 다른 가맹점사업자 또는 직영점의 제품 또는 상품이 배달 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제품 또는 상품을 다른 가맹점사업자 또는 직영점의 영업 지역에 배달 할 수도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해피오더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가입신청 시기(별도 공지)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일,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에서 배달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배달업체 없음, 라이더 없음 등)에는 서비스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는 해피오더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해피오더에서 판매한 상품 “권장가”의 5%(VAT별도)를 서비스제공자에게 서비스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서비스제공자는 픽업이나 배달이 완료된 주문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자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정산 대금을 지급합니다. 위 서비스 수수료에는 배달료 또는 배달 관련 결제 수수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고객에게 적용할 해피포인트와 유통채널에 지급할 수수료 등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는 고객이 주문을 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주문을 확인한 후 해당 품목을 준비하여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게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약정에 따라 취급 품목의 재고를 확보, 수량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자 또는 가맹본부가 정한 품목만 취급하여야 하고, 제품 또는 상품의 제공 시 전용 패키지를 사용하여 오염 또는 파손으로 인한 고객의 클레임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7. 가맹점사업자는 해피오더를 이용하는 고객을 매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고객과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고객이 해피오더를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이벤트, 할인, 증정 등 각종 프로모션이나 물품구매, 서비스 제공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8. 가맹점사업자는 해피오더와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법하게 취득, 보관, 제공, 위탁해서는 안됩니다.
9. 가맹점사업자는 재고 부족 등으로 주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서비스제공자 또는 가맹본부가 정한 품목 외에는 고객이 주문을 취소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미 출하된 품목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10. 가맹점사업자는 고객이 배달 주문을 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지정하는 배달 업체를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서비스제공자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배달료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결제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피오더 서비스에 가입한 가맹점사업자가 임의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해지한 경우 또는 약정 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이 해지된 경우에는 1년간 서비스의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품질·위생기준 등 귀하의 가맹점운영상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실태를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점검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식품위생법관련점검	별지Ⅲ 및 식품위생법 기준사항	수시	SPC식품안전센터 대행
서비스평가		수시	직접 또는 제3자 대행
가맹점 경영상태 점검	별지 V 참고	정기	직접 또는 제3자 대행

- * 각 점검/평가결과 식품위생 교육등 보수교육을 유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이 외에도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점검 및 평가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각종 시정조치, 클레임 등 영업활동 관련 사항을 당사에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가맹계약 갱신 시 귀하가 갱신 대가를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매입대금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의 증액은 있을 수 있으며, 귀하의 매출 활성화로 1개월 기준 일평균 매입대금의 5일간 합산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의 80%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와 귀하는 계약기간 중에도 매입대금 증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계약이행보증금을 협의하여 증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 시 디자인 설계 매뉴얼 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①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가맹사업을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양도 전에 제품대금, 보증금 등 모든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②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귀하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당사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귀하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잠바주스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으나, 제품대금, 환경개선 등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잔여분이 있는 경우 그 잔여분 등을 정산하여야 하며, 사전에 당사에 양도사실을 통지한 후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산 및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이행보증금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43]쪽에 나와 있습니다.

한편, 귀하는 가맹계약 기간 동안 국내에서 잠바주스와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당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귀하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맹계약 종료 후의 조치사항

가맹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귀하는 지체없이 귀하의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①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모든 금전채무 상환
- ② 매장, 전화번호부, 온라인 등 영업 관련 장소에서 가맹계약 종료 후 지체없이 점포 내·외부 영업표지 제거 및 개수 기타 직·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당사의 가맹점·가맹점사업자로 오인받을 수 있는 행위의 금지 (단, 가맹계약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이를 대신 집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당사의 영업표지가 적용된 모든 물품에 대한 사용·게시 금지 및 당사의 영업표지 제거
- ④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운영매뉴얼, 교육자료, 지침 등 가맹점운영과 관련한 자료의 반환
- ⑤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설비, 전산시스템 등 당사의 소유물 또는 당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모든 물품 및 비용의 반환
- ⑥ 영업표지의 제거, 물품의 반환·폐기 등을 위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대표적인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잠바주스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별지 VII]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잠바주스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명칭	관계	내용	매출액(천원)
(주)에스피씨지에프에스	계열회사		(비공개)
(주)에스피씨삼립	계열회사		(비공개)
에스피엘(주)	계열회사		(비공개)
비알코리아(주)	계열회사		(비공개)
SPC FRANCE	계열회사		(비공개)
(주)호진지리산보천	계열회사		(비공개)
(주)에스피씨팩	계열회사		(비공개)
합계			(비공개)

상기 경제적 이익은 추정액으로, 특수관계인의 관련 매출액(2023년도에 특수관계인이 납품한 위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모두 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원부자재비용, 판매관리비용, 유통비용 등 제반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바, 위 경제적 이익이 곧 특수관계인의 실제 이익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잠바주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지 않습니다.

2) 당사가 잠바주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상품·용역명	가맹본부 제공 상품 일체(제품 등 내역 홈페이지 및 POS 참고)
제한내용 및 조건	1. 상표권 보호,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 및 가맹점 전체의 이미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 제한 내역 ① 담배 판매 금지 ② 음료 자판기 설치 금지 등 ③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해가 되는 물품 ④ 가맹본부의 통일적 이미지를 해하는 물품 ⑤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공급품 또는 가맹본부가 인정하는 품질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규격외 제품
위반 시 책임	1. 위 제한 내용을 위반할 경우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책임 : 계약해지 ② 근거 : 가맹사업법 및 가맹계약서 2.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계약은 즉시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정당한 범위 내에서 판매 등의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일정기준에 따른 규격제품 외의 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규격 제품 사용 준수 의무

(ㄱ) 규격 제품이란 당사가 생산, 공급하는 제품이나 사전에 인정한 제품을 말합니다.

(ㄴ) 귀하는 당사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사전에 인정한 제품 등을 구매하여 당사가 정

한 기준에 의거 보관, 진열 판매하여야 합니다.

(ㄷ) 귀하는 당사가 공급하는 공급품 또는 인정하는 수준의 공급품을 매입하여 제품 판매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규격 제품 사용에 관한 점검

(ㄱ) 당사는 일정 기준에 따른 규격제품의 사용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ㄴ) 귀하가 가맹본부의 점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는 규격 제품 사용준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때까지 제품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ㄷ) 당사는 점검결과 규격 외 제품사용을 발견한 경우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규격 외 제품 사용점 제재 기준

구 분	제품 등 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 기준				차수 적용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위반	
조치사항	점주 지도 및 시정조치	음료원료 공급중단 10일	음료원료 공급중단 15일	계약 해지	1년간 (발생일 로부터)
	각종 장려금 및 모든 지원대상 제외 - 3개월				

※ 제품 등의 공급중단기간 등 제재수준은 가맹본부가 경감 할 수 있음

※ 위반 횟수에 관계 없이 계약갱신이 거절되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④ 기타사항

(ㄱ) 당사는 제품 규격서를 작성하여 귀하에게 제공하며, 규격제품 변경 사항 발생 등으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POS를 통하여 그 내용을 고지합니다.

(ㄴ) 이외에도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식품안전규정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식품위생법 등 식품안전 규정준수를 위반하였을 때 식품위생법 행정처분기준(동법시행규칙 제53조) 따라 위반행위를 분류한 후 별지의 식품위생관련 금지행위 및 조치기준의 표에 따라 조치를 취합니다.

(ㄷ) 귀하가 규격제품 외의 제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ㄹ)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정당한 범위 내에서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ㄹ) 당사는 제품의 판매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귀하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매뉴얼에 따라 제품을 제조, 관리, 판매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귀하가 매뉴얼을 위반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① 당사는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 ② 다만, 상품 및 원재료 자체의 판매와 가맹계약상 명기된 영업장소(가맹점포) 외의 장소에서의 판매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소매가격(단기적 또는 예외적 판촉 세일 가격은 포함하지 아니함)을 고려하여 제품 등의 판매가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가격사항은 잠바주스 홈페이지(www.jambajuice.co.kr) 나 POS 가격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주스 및 스무디 음료를 제조 판매하는 영업	잠바주스	X

2) 영업지역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15p. 가맹점입지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와 개별 협의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 (*경계선 불포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 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 또는 귀하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 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3,000세대 이상의 신규 아파트단지, 300병상 이상의 대형종합병원, 대형 쇼핑몰 기타 이에 준하는 상업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철길 또는 왕복8차선 이상의 도로 등의 지형지물로 인하여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 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상호 협의 → 재조정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합의 및 합의서면 작성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간 영업지역 외 영업활동에 대하여 개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 일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는 원활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 당사자간 원만한 분쟁 해결이 어려워 법률적 분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당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직/가맹점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빵류, 쿠키류 등 베이커리 전반 커피, 케익/파이류 등	세부업종/제품사양이 다름
직/가맹점	파스쿠찌, 커피앳웍스	커피, 제조음료류, 케익/파이류 등	세부업종/제품사양이 다름
직영점	리나스	샌드위치, 요거트, 우유, 커피, 완제/조제음료 등	세부업종/제품사양이 다름
직영점	퀵스파크	빵류, 쿠키류 등 베이커리 전반 커피/조제음료 등	세부업종/제품사양이 다름
직영점	Passion 5	빵류, 쿠키류 등 베이커리 전반 커피/조제음료 등	제품사양이 다름
B2B	웰스토리	커피, 주스, 음료 RTD	세부업종/제품사양이 다름
대형마트	롯데마트	커피, 주스, 음료 RTD	세부업종/제품사양이 다름
	이마트		
제휴업체	스포애니	커피, 주스, 음료 RTD	세부업종/제품사양이 다름
	엠엔피트니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모바일	(주)섹타나인	해피앱 어플리케이션	모바일교환권	모바일 유통채널
	나우픽	어플리케이션	커피,주스,음료 RTD	모바일 유통채널
	요마트	어플리케이션	커피,주스,음료 RTD	모바일 유통채널
	B마트	어플리케이션	커피,주스,음료 RTD	모바일 유통채널
온라인	SSG닷컴	www.sgg.com	커피,주스,음료 RTD	온라인 유통채널
	쿠팡	www.coupang.com	커피,주스,음료 RTD	온라인 유통채널
	마켓컬리	www.kurly.com	커피,주스,음료 RTD	온라인 유통채널
	11번가	www.11st.co.kr	커피,주스,음료 RTD	온라인 유통채널
	G마켓	www.gmarket.co.kr	커피,주스,음료 RTD	온라인 유통채널
	네이버	www.naver.com	커피,주스,음료 RTD	온라인 유통채널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① 온라인 등 판매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딜리버리 서비스 등의 판매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욱 발전하는 온라인 콘텐츠 문화의 확산이라는 시대적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한 것으로, 오프라인의 지역 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개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온라인 판매나 딜리버리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각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당사는 직접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개별 가맹점사업자와 별도 약정에 따라 고객에 대한 배달이나 고객의 픽업에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온라인쇼핑몰은 해피포인트 어플리케이션 내 해피마켓 및 타사 온라인쇼핑몰 입점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② 자동판매기 판매

당사는 대학교 등 상권의 특성에 따라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판매기의 관리 및 운영은 당사 또는 인근 가맹점에 의하여 시행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희망자의 영업지역에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미리 알려드리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그 가맹점사업자와 운영방식 및 주체 등을 합의합니다.

③ 기타 특납 등 판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수요처에 특납 등의 방식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는 원칙적으로 위 수요처가 당사의 영업표지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나, 내부적으로 소속 임직원, 재학생 등에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 상품을 유통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②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21.27	78.73	-	-

① 매출액 비중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작성하며,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해당 채널의 판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여 가맹점에게 발생한 매출액 또는 가맹본부가 기타 오프라인 채널(직영점 등)을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매출액의 비중입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2023	0	1.8

① 오프라인 전용상품이란 가맹점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가맹점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오프라인 전용상품은 직영점에서 모두 판매하고 있어 위 비중에서 제외하였습니다.

② 온라인 전용상품이란 당사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거나 당사가 온라인 플랫폼에만 공급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온라인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관련매출은 직영점 매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잠바주스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 기간은 기존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입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기간 중 점포를 리뉴얼(단, 부분리뉴얼 제외), 이전, 확장 등 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기존 계약기간에서 3년이 연장됩니다.

위에서 정한 계약기간과 다르게 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는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지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	

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당사는 필요한 경우 가맹계약 갱신에 관하여 소정의 심의절차를 진행하여 갱신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물품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2조 제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당해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제품, 상품 등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서비스 점검 및 경영상태 점검 결과 갱신 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등)	
○ 가맹본부의 경영에 필수적인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기타 그 밖에 귀하가 가맹사업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①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처분을 당하거나 주요재산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또는 경매 신청이 된 경우	제43조 제2항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위생, 안전 등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불가피하게 환경개선 등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환경개선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	
○계약이행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해당채권이 제3자에 의하여 (가)압류된 경우	
○가맹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당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로 점포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가맹점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타 가맹계약의 중요사항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을 위반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이 해지되오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43조 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①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②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③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 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별지Ⅲ]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 노동관계법령의 준수여부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제20조 제2항
○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즉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3조 제1항

② 귀하가 당사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본부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41조
○ 가맹본부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 천재지변, 중대한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본부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본부가 약정한 원·부재료 등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제41조
○ 가맹본부가 계약상의 중요의무를 불이행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곤란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가맹계약 기간 중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재조정 완료 및 적용	POS시스템상의 동의 및 서면 작성 *동의나 공지 여부 및 서면 작성 등 조정방법은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음

변경안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존 계약내용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안이 관계 법령 기타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등에 근거한 내용으로서 기존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계약갱신 거절사유 등의 사유가 될 수도 있사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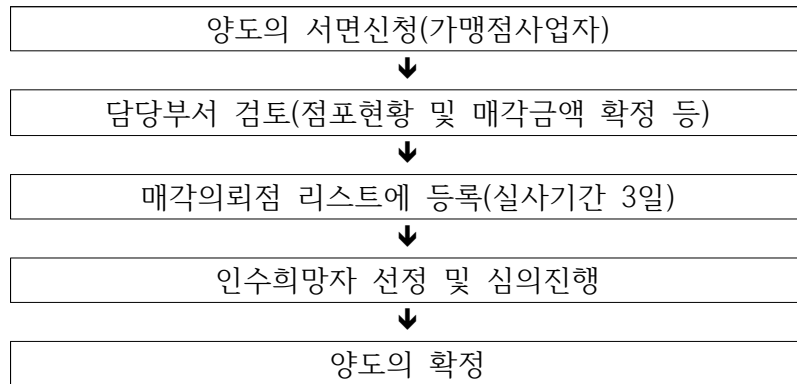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아래의 환매조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의 운영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 대하여 ‘점포개시를 위하여 지출한 초기 인테리어를 5년의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매 조건	환매 절차	비고
▷가맹본부가 직영점으로 운영하던 것을 가맹점사업자가 인수한 점포 ▷가맹본부가 당초 직영점 개설을 목적으로 확보하였던 점포 ▷가맹본부가 임대차.인테리어.장비설치계약 등을 직접 체결하였던 점포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영업을 중단하는 점포	환매 신청 ▼ 가치평가 (감가상각고려) ▼ 환매확정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귀하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서면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각금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결정됩니다. 그러나 인테리어, 가구, 장비 등은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5년 정액법에 따른 잔존가치로 평가하되, 양도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제3자인 평가기관의 공인 평가결과를 같이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감정평가료 등의 비용은 양도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양도의 확정 전, 양도인은 당사와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물품대금의 미수금, 환경개선 지원을 받은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잔여금액 등)을 정산하여야 하며, 만일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도의 확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양도가 확정된 점포에 대해서는 확정시점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의 범위 내에서만 주문/공급이 이루어짐을 유념하여 주십시오.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되, 양수인은 개점비 등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조건으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양수인의 선택에 따라 신규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양수인은 개점비 지급에 대한 대가로 당사로부터 인력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양수인에 대한 양도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① 양수인에게 계약 갱신거절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여기서 ‘이에 준하는 사유’에는 타 가맹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동일한 사유로 가맹계약이 갱신 거절된 사실이 포함됩니다.)
- ② 양수인에게 계약 해지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여기서 ‘이에 준하는 사유’에는 타 가맹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동일한 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포함됩니다)
- ③ 양수인에게 계약 해지 사유가 있거나 양수인이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시설, 인력등을 확보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사업자가 양수인의 가맹사업 관련 의무 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양수인이 동종의 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⑤ 양수인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⑥ 기타 양수인이 잠바주스를 운영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 및 승계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성년 후견이 개시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기[2]가맹점 운영권의 양도]의 내용 중 가맹본부가 양도를 승인하지 않는 양수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에 대한 승인은 거절될 수 있고,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 승인 거절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3개월 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할 경우 가맹계약은 종료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서면통지 상기 사유참고	모든 권리의무	서면통지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당사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서면통지 및 승인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불가능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국내에서 잠바주스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잠바주스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7:00~23:00 (16시간)	365일(연중무휴)	문의: 해당영업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및 영업장 근무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포 사정에 의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구분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점포면적 (18.0㎡)	2 ~ 3	○	○	일판매가 70만원 : 3명이상 일판매가 50만원 증가시 필요인원 1명씩 추가
점포면적 (59.5㎡)	3 ~ 4	○	○	일판매가 100만원 : 4명이상 일판매가 50만원 증가시 필요인원 1명씩 추가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①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과 가맹점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Q(Quality : 품질), F (Fresh : 신선도), I (Item : 제품구색), C(Cleanness : 청결, 위생), S(Service : 서비스) 및 5S(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등에 관한 정기 및 수시점검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ㄴ) 당사는 Q,F,I,C,S 및 5S와 관련하여 그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 등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제품 등 견본 징구 요구 및 기타 조치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합니다.

(ㄷ) 당사는 위 점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등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그 외에도 우리 회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점포 내/외부의 노후, 손상된 부분의 개/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간판, 내부조명, 진열대(쇼케이스 포함) 등 브랜드 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개/보수 요청과 제조,보관,진열,판매,기타장비 등 제품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교체,수리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증대 등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

국 또는 일단의 지역(시, 군, 구) 내에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할 수 있습니다.

① 광고비용

당사는 당사의 기업 광고와 제품 등의 광고 등을 총괄하고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또는 일단의 지역 내에서 광고를 시행하는 경우 광고비용은 당사 및 그 지역 내에 속한 가맹점사업자가 안분하여 부담합니다.

② 판촉비용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판촉행사 및 상품교환권, 무료구매권, 할인권 등에 대한 판매·사용 등의 행사기간 및 유효기간·금액 등 주요사항을 명시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적인 판촉행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판촉행사와 관련한 비용부담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거나 별도의 약정을 체결합니다.

다만,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이상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에 대해서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분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광 고	상품 및 브랜드 등 광고	안분	안분	-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안분	
판 촉	HPC운영	적립액의 50%	적립액의 50%	- 별도 절차 없음 (대금청구서 반영-5일단위 정산)	상시 운영
	판촉물행사 (판촉비용*)	- 사전 공지 비율에 따라 분담. - 비율이 사전공지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가맹본부 50%, 가맹점사업자 50% 비율로 안분.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는 프로모션 동의 점포에 대하여 시행. 다만, 전체 가맹점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70%이상의 동의를 있어야 함)	주문취합 또는 주문시 자동반영
	할인/쿠폰 행사 (할인금액)				
	증정행사 (적용상품)				

	출하가)		가맹점 부담비용이 없거나, 권장가로 전액 정산되는 경우에는 별도 동의없이 판촉행사를 시행할 수 있음.(이 경우 사전에 공지함)	월별 판촉 행사
	제휴행사 (발생수수료)			
	기타 개별 행사			

* 판촉비용이란, 판촉물행사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판촉물제작업체 등으로부터 해당 판촉물을 구입하고 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기까지 소요한 모든 비용으로서, 판촉물의 구입대금·보관비·관리비·운반비 및 기타 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모든 필요경비를 합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 당사는 해피포인트 카드 제도(HP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피포인트카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가맹점사업자는 적립금의 50%와 카드비용의 50% 및 통신비용을 부담하며, 가맹본부는 적립금의 50%, 해피포인트카드의 시스템제반 운영비용(시스템 운용비용, 카드비용의 50%, 신청서 제작 및 입력비용, 080 서비스 운영비용, VAN 사용료 등)을 부담합니다.

※ 자세한 해피포인트카드 제도에 대한 내용은 관련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외에도 각종 제휴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는 가맹점 운영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지적인 광고 및 판촉행사를 자신의 비용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그 계획을 당사에 통지하여 상호간 합의한 범위 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당사의 영업비밀,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담긴 자료를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당사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당사의 허락 없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 누설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당사는 당사 또는 당사에 속한 임원의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 또는 당사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개인정보의 활용 및 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가맹 희망자에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관련 법률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및 이후의 점포관리, 판촉/홍보 등의 영업활동에 활용하거나, 법률에 따른 국가기관의 협조요청 등에 따라 일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일반적인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가맹희망자 상담 및 면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등 제공	65일 내외	
가맹 희망 상권 내 점포 검토	가맹점사업자가 희망하는 상권 내의 점포 파악	D-60	
점포 위치도(약도)송부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고자 하는 점포의 위치도 송부(방문 및 FAX)	D-59~58	
점포 시장 조사	가맹본부 시장조사 자료 제공 및		

	가맹점사업자의 실사검증		
점포 개설 여부 확정	시장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실사보고서를 통하여 점포 개설 여부 확정		
개설일정 협의 및 가맹계약 체결	가맹계약체결, 계약이행보증금, 가맹금, 교육비, 디자인 설계 매뉴얼 비 입금, 인 테리어, 인·허가 등에 대한 세부사항설명 및	D-50	25,950 (부가세포함)
점포 LAY-OUT 확정	영업, 오픈지원, 설비 승인 후 확정	D-45일 전	
점포 시공 계약	시공업체 견적 제시 및 업체 선정 인테리어 등 계약 체결	D-44~42(3일)	인테리어 계약금
점주 교육	영업교육, 제조교육	D-41(5일)	
오픈 진행 협의	오픈 홍보, 준비, 이벤트 협의/결정	D-24~5(20일)	인테리어 중도금
오픈 전 최종 점검	오픈지원 및 운영실습교육 실시 인테리어 등 대금 입금 오픈비용/장비대 입금	D-5	인테리어등 잔금 간판/장비/가구 외 오픈비용
점포 오픈	점포 운영 개시	D-day	

위 표에 따른 절차 및 소요기간 등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개별 점포 상황에 따라 그 기간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보공개서 제공 및 가맹계약 체결은 귀하의 범용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당사 전자가맹계약시스템(<http://franchise.spc.co.kr>)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귀하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당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귀하 또는 당사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 분쟁발생시 원만하고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외부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상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위 절차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 02-2276-6096)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당사와 귀하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VI 환경개선 제도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판매촉진행사시 인력지원 등 내역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개점행사	홍보물/판촉물 오픈행사지원	신규점, 양도양수점 (신규조건)	오픈일	-행사쿠폰, POP등 -판촉물지원 -행사인력지원: 행사 인원 1인외 -시음행사: 음료 원료지원외	선택 사항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비고
정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회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점포방문/ 집체교육 등	사안별 상이	
비정기	상동	상동	상동	
비정기	가맹점사업자 요청시	상동	상동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신용 제공 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부 지원내용을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정책	주요 내용	지원 조건	지원 기간	지원 내용
행복한 장학금	SPC그룹 직·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등록금 중 50% / 연 2회 지원	-지원일 현재 SPC그룹 브랜드 직·가 맹 매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대 학생으로서 과거 근무했던 기간을 포 함하여 총 근무기간 3개월 또는 180시 간 이상인 자 -해당 학기 입학, 재학 또는 복학 예 정자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지원 가능	점포 근무기간 내 지원	선정 기준에 의거 1인당 등록금 중 50% 지급
판매 장려금	가맹점 오픈시 조기안정화를 위한 오픈판촉행사 지원	가맹금을 지급한 신규점/양도양수점	오픈 시 (1회)	점당 약 300천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잠바주스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가맹점 입문 과정	● 오리엔테이션 및 회사 소개 ● MOT 이해 및 매장 관리 체크리스트 ● 점포 위생 이론 ● 스무디, 생과일 주스 레시피 이해 ● 고객 응대 표준 및 클레임 응대 ● POS시스템교육 및 매출등록, Web pos	집단강의 실습교육	점포 오픈 이내	필수 교육
	● 점포 현장 실습을 통한 운영 스킬 습득 ● 운영장비 관리 및 이해 ● 위생/ 점포 관리 실습 ● 수불/ 정산 관리 ● 스무디 & 생과일 주스 제조 실습	실습교육		
팀 리더 향상 과정	● 잠바주스 서비스 표준 ● 고객 감탄 및 WOW서비스 ● 직원 멘토 및 코칭 스킬	집단 강의 토의/ 발표	연 1~2회	필수 교육
매니저 향상과정	● 잠바주스 매니저 역할 ● 위생/품질 관리 ● 고객 응대 및 서비스 업그레이드 교육 ● 커뮤니케이션 스킬	집단 강의 토의/ 발표	연 1~2회	필수 교육

※ 교육수료는 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수강하고 TEST 80점 이상이어야 함.

※ 교육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1) 신규 가맹점 입문과정 교육 입과 인원 및 비용 기준

※ 과정별로 기준 인원보다 추가 입과 시 단위과정 추가 교육비 반영

(추가교육시 인당 550천원(VAT포함) 추가교육비 별도)

구분	기준인원	비용(단위:천원, 부가세포함)
직무이론	3명 (점주 1명 / 직원 2명)	825
제조실습	3명 (점주 1명 / 직원 2명)	825
점포실습		

2) 기존점 보수교육 입과인원 및 비용기준

※ 가맹점사업자는 위생/품질 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연도 내에 점포운영과 품질유지를 위한 필수교육을 수료

(당사: 교육재료비 및 강사료/ 가맹점사업자: 교육대상자 인건비, 교통비, 식비 각 부담)

3) 교육비 환불 기준

상기 금액은 귀하가 신규가맹점 입문과정을 모두 수료한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각 과정별로 50% 미만으로 수강하고 부득이하게 중도에 교육을 중단, 중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정에 한하여 50%를 반환합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천원,부가세포함)	비고
신규 점주 입문 과정	80시간	1,650(부가세포함)	최초 계약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교육 대상자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 등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과정			불이익내용	조치기간	비고
신규가맹점 입문 과정			가맹점 오픈 불가 (단, 입과기준 외적인 대상은 제외)		
교육 불참 점	교육 미참 점	1회	장려금지급대상 제외	2개월	1년간 (발생일로부터)
		2회		4개월	
		3회	재계약불가	계약종료시점 재계약 불가	
서 비 스	평가 C등급 이하점	1회	서비스 보수교육참석 :불참시 장려금 지급대상 제외	1회/2개월	1년간 (발생일로부터)
		2회		1회/3개월	
		3회		1회/4개월	
		4회	제품 공급 중단	7일	
		5회	계약해지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양재사옥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20 (양재동, 지하 1층)
2	서울	연세세브란스점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신촌동, 신촌세브란스병원 암병동 3층)
3	서울	연세대학교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백양로 지하 1층
4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12 김포국제공항 국내선청사 2층
5	서울	서울대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대한외래센터 지하1층(연건동)
6	서울	서초삼성타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23, 서초타운 트라펠리스 101호
7	서울	동대문두타점	서울 중구 을지로6가 두산타워빌딩 3층
8	서울	롯데월드어드벤처점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롯데월드어드벤처 2층
9	서울	압구정역점	서울 강남구 신사동 579-3 베네하임시티 1층(103, 104, 105호)
10	경기	분당서울대병원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 (분당서울대병원 지하 1층)
11	경기	수원삼성연구소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130, 삼성소재연구단지 V-V39동 2층 (매탄동)
12	인천	인천공항 1호점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 3층(운서동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동편)
13	인천	인천공항 2호점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1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A/S)3층
14	인천	인천공항T2 1호점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B1F
15	인천	인천공항T2 2호점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F
16	인천	인천공항 4호점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 3층(운서동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서편)
17	인천	인천공항T2 3호점	인천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 인천공항 제 2터미널 면세동 3층(운서동)
18	인천	롯데인천터미널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연남로 35,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 지하1층 식품관
19	인천	인천공항 5호점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제 1여객터미널 일반구역 3층 서편
20	부산	신세계센텀시티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35 (우동, 신세계 센텀시티 지하 1층)
21	부산	롯데부산본점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롯데백화점부산본점 지하1층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연, 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6년 3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 천 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③
617,398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http://franchise.spc.c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 지 목 차

1. [별지 Ⅰ] 재무상태표
2. [별지 Ⅱ] 손익계산서
3. [별지 Ⅲ] 식품위생관련 금지행위 및 조치 기준
4. [별지 Ⅳ] 교육·훈련 불참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조치 적용기준
5. [별지 Ⅴ] 가맹점 경영상태 점검
6. [별지 Ⅵ] 점포환경개선
7. [별지 Ⅶ] 주요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8. [별지 Ⅷ] 필수품목 및 권장품목

【별지 I】 ~ 【별지 II】 재무현황 전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지 III] 식품위생관련 금지행위 및 조치 기준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가맹점 운영의 일반지침 위반 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조치 기준 】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지Ⅳ] 교육·훈련 불참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조치 적용기준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지 V] 가맹점 경영상태 점검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지 VI] 점포환경개선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지 VII] 주요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지 VIII】 필수품목 및 권장품목

1. 구입강제품목 (필수품목) 2024년 7월 3일 기준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구입권장품목 2024년 7월 3일 기준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